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관련 상속세 부담에 대한 실증연구

최재령

I. 서론

중소기업이 문자 그대로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승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특히 고용측면에서의 비중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확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왔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 보다 엄격히 말하자면 중소기업자의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다양한 제도, 특히 세제면에서의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와 할 수 있다.¹⁾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그 공제한도가 확대되어 가업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이르렀다.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피상속인 생전에 보다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공제한도 100억 원내에서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시 10% 저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는 지원대상 기업, 피상속인(증여자), 상속인(수증자)에 대한 사전요건과 상속 또는 증여 이후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나,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함에 있어 과격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여타 상속 및 증여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부자감세라는 여론의 지적도 적지 않다. 비록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2015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및 연매출 3,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의 가업승계 지원강화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당 기업가들로부터 징수해야할 상속세액을 포기하고서라도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면 차후 적어도 그 이상의 이익, 즉 고용유지 또는 확대를 포함한 각종 사회경제적인 이익이 더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가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한 연구물은 많지 않다.²⁾ 뿐만 아니라, 몇몇 연구소 및 기업인 유관단체

1)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센터에서는 거의 매년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업 승계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상속, 증여세 등 조세부담'이라고 답했다.

<표1> 가업승계시 주된 어려움(단위: %)

구분	상속·증여세 등 조세부담	지분구조 복잡성	거래처의 물량축소, 관계악화	금융기관 자금활용 곤란	임원, 종업원과의 갈등	가족(부모, 형제, 친척)과의 갈등	기타
응답 비율	76.6	7.4	4.4	3.8	3.0	2.4	2.4

「2014 중소기업실태조사」 2015, 중소기업중앙회

2) 가족 구성원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즉 가업승계와 가족 이외의 구성원에게 해당 기업을 매각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이전한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분에 속한 기업의 경영성과, 고용창출 효과 등을 직접 비교한 연구물은 거의 없다. 다만, Tasoutsoura(2015)는 2003년 그리스에서 가업승계와 관련된 상속세율이 대폭 인하된 이후 해당 기업들의 투자가 그 이전보다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에서 실시한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과중한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사업승계 자체가 어렵거나, 승계이후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우려 등이 가업상속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확대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왔는데, 이 역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사자료를 통해 분석한 보고서 또는 논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매스컴에 기사화된 특정 기업의 사례 외에 앞서 언급한 기업인 유관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가 그나마 구체적인 자료를 사용한 보고서이고, 그것도 실질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상속세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측정하기 보다는 응답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표2> 가업상속·증여세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일시적 경영난 발생	사업축소	폐업이나 도산 초래	사업용 자산이나 주식 매각	영향 없음
응답 비율	30.1	24.3	11.0	11.0	23.7

「2013 중소기업실태조사」 2014,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자들이 공개적인 자료를 통해서는 승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마친 개별 기업 및 해당 기업의 피상속인, 상속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산내역이나 과세상황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이 파악되지 않는 이상 상속세 납부가 어느 정도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지는 알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산식을 통해 추산된 기업가치와 해당 기업의 대주주 또는 소유주 개인의 재산내역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위한 상속세 추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제도의 개선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자료로 활용된 실사자료 역시 기업가치 측정을 위한 각종 재무자료 외에 기업 소유주의 개인자산 현황은 소유주의 구두진술에 의존한 것이 많고 이 또한 기업 소유주가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그러한 자료마저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향후 가업승계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본 논문이 제한적이거나 시사점을 주리라고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후 논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소개한 가업승계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II.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1. 가업상속공제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에 규정되어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15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에 대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기업을 경영한 경우 200억 원, 15년 이상인 경우는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는 500억 원 한도 내에서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사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상속이후 10년간 가업자산의 80%를 유지해야 하고,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하며, 상속 받은 지분을 합병이나 분할 등 사유 외에는 100%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매년 상속직전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80%를 유지해야 하며 10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100%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용유지 조건이 부과된다. 또한 상속이후 해당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³⁾ 만약 이러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시 안분하여 감면받은 상속세를 추징한다.⁴⁾ 가업상속공제제도는 2008년에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20%, 30억 원으로 늘어난 후 지속적으로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예를 들어 2009년에는 전년도 20%였던 공제율이 40%로 확대되었고, 다시 2012년도에는 70%로 대폭 확대된데 이어 2014년도에는 공제율이 100%에 이르게 되었다. 공제한도 또한 2009년에 100억 원으로 확대된 후, 2012년 300억 원으로, 다시 2014년에는 5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앞서 밝힌 바처럼 2015년에는 공제한도가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다.

<표3>가업상속공제의 확대

상속개시일	공제대상	가업상속공제액(공제율)	공제한도
'07.12.31 이전	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가액 전부(100%)	1억 원
'08.1.1. 이후	15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20% ② 2억 원(미달시 그 가액)	30억 원
'09.1.1. 이후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40% ② 2억 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 이상: 60억 원 -15년 이상: 80억 원 -20년 이상:100억 원
'11.1.1. 이후	중소기업 및 매출 1천5백억 원 이하	상동	상동
'12.1.1. 이후	상동	다음 ①, ② 중 큰 가액 ① 가업상속재산의 70% ② 2억 원(미달시 그 가액)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 이상: 100억 원 -15년 이상: 15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13.1.1. 이후	중소기업 및 매출 2천억 원 이하	상동	상동
'14.1.1. 이후	중소기업 및 매출 3천억 원 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 전부(100%)	가업 영위기간 별 -10년 이상: 200억 원 -15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500억 원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상속·증여세」 2015. 4. 국제청

아래 <표4>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을 승계한 경우는 공제한도가 30억 원으로 이전에 비해 대폭 확대된 2008년 이후부터 가장 최근 통계인 2014년까지 매년 100건을 넘지 않는다. 2010년과 2013년을 기점으로 공제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3)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24일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이후 업종변경에 대한 규정을 보다 완화하여 소분류내에서 업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4) 사후관리 기간은 상속개시이후 10년으로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이 7년 미만일 경우 감면받은 상속세 전부를, 7년 이상 8년 미만의 경우 90%를, 8년 이상 9년 미만의 경우 80%를, 9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70%를 각각 추징한다.

늘어났는데 이는 앞의 <표3>에서 보는 것처럼 2009년도와 2012년도에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크게 늘어났고 이에 대한 효과가 1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추정컨대 2014년 이후 상속분부터 다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대폭 늘어난 만큼 2015년도의 가업상속공제금액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4>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단위: 백만 원)

	과세		과세미달*		합계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건수	공제금액
2008년	41	3,217	10	831	51	4,048
2009년	37	8,356	6	1,439	43	9,795
2010년	46	36,487	8	2,131	54	38,618
2011년	35	30,091	11	2,417	46	32,508
2012년	46	30,707	12	3,638	58	34,345
2013년	60	86,694	10	6,613	70	93,307
2014년	63	94,405	5	4,203	68	98,608

*과세미달은 상속세계산시 공제는 되었지만 과표미달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지칭

「국세통계연보」 2012, 2015 국세청

2.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⑥은 앞서 가업상속공제제도상의 가업승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사전증여 할 때 100억 원 한도 내에서 10%로 저율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와는 달리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는 법인인 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 증여한 주식가치는 이후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여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산출되며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납부 시 차감된다. 상속시점에 상속세 산출을 위한 과표에 합산되는 주식가액은 상속시점에 계산된 가액이 아니라 사전 증여시 계산된 가액이다. 따라서 향후 회사의 주식가치의 급격한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증여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상속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전제로 하는 반면 증여를 통한 승계는 승계시점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 할 수 있다는데 그 이점이 있다. 실제로도 앞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한 상속공제실적과 증여세과세특례를 통한 증여실적을 비교해보면 증여세과세특례를 통한 증여실적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과세 미달을 포함한 건수 및 공제금액이 각각 68건에 986억 원(위 <표4>참조)인데 비해 가업승계관련 증여세과세특례 적용 건수 및 증여재산가액은 과세미달을 포함하여 각각 106건에 1,393억 원에 달한다⁵⁾. 관련 실무적으로도 많은 중소기업 CEO들은 생전에 증여를 통해 가업을 후대에 승계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적어도 7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수증자 등이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공제액 및 이자 해당액을 추징하게 된다.

Ⅲ. 상속세 부담에 대한 실증연구

5) 2014년 국세통계연보 6-4-0 창업자금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관세특례 결정 현황을 참조하라

1. 자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127개 중소기업의 업종, 자산, 매출, 이익규모, 주주구성 등 기업관련 자료와 최대주주이자 피상속인인 대표자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대표자 개인재산내역 등을 파악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기준을 적용하여⁶⁾ 상속세를 추산하였다. 아울러 이들 기업의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가업상속공제 후 추산된 상속세를 산출하였다. 또한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사전 요건들의 충족여부도 확인하였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

아래 <표5>는 127개 중소기업의 조사대상 기업 중 대표자 즉, 기업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가업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과 기타 개인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 법인기업 중에서 개인재산 내역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내역을 조사한 것이다. 승계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과 개인소유 부동산, 금융재산 및 퇴직금, 각종 회원권 등 기타 재산에 개인채무를 차감한 순상속재산은 약 110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6>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속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비상장주식, 즉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재산으로서 개인부채를 감안하지 않은 전체 재산의 61%를 차지했으며, 개인부동산이 25%로 평균 28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평균은 약 1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재산은 평균 5.5억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재산과 기타재산은 상속인이 기업의 승계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상속세의 주된 납부재원으로 간주하였다.

<표5> 상속재산 내역*(단위: 백만 원)

변수	Obs	Mean	Std. Dev.	Min	Max
비상장주식(A)**	96	6,724.9	12,678.5	142	109,315
개인부동산(B)	96	2,770.4	3,419.3	0	15,295
금융재산(C)	96	1,025.4	1,774.2	0	10,900
기타재산(D)	96	553.3	765.5	0	3,740
개인부채(E)	96	180.7	702.0	0	5,823
순상속재산 (A+B+C+D-E)	96	10,893.3	14,707.0	0	119,315

*개인재산내역을 공개한 96개 법인 기업

**본 논문의 대상이 된 중소기업법인의 경우 비상장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본 논문에서는 비상장주식으로 표현. 만일 해당기업이 상장된 경우는 상장주식의 가치임.

<표6> 개인부채를 제외한 상속재산구성

구분	비상장주식	개인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자산	합계
금액(백만원)	6,724.9	2,770.4	1,025.4	553.3	11,072.0
비중(%)	60.7	25.0	9.3	5.0	100.0

6) 컨설팅이 2013년에 이루어진 기업의 경우 2013년 조사당시의 재산내역 및 상속인, 피상속인 자료에 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및 상속세 계산식을 적용용하여 상속세 등을 산출하였다.

3. 추정 상속세 및 납부재원 분석

가. 상속세의 추산

상속세는 아래 <식1>의 산식으로 계산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표7>의 각 구간별 누진세율을 곱하고 각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아래의 공식에 의해 산출된다.

<식1> 상속세 과세표준

$$= \text{상속재산가액} [\text{본래의 상속재산(유증·사인증여재산 포함)} + \text{간주상속재산*} + \text{추정상속재산**}] - \text{채무 등(공과금+장례비+채무)} + \text{사전증여재산***} - \text{각종 상속공제} - \text{감정평가수수료}$$

*간주상속재산: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된 재산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10년(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표7> 상속세율(2000. 11. 이후)

과세표준	상속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000만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2015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2015. 7. 국세청

앞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가업상속공제제도란 위 <식1>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승계의 목적물이 되는 가업의 가액⁷⁾을 과세표준에서 100%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법인의 경우 <표5>의 비상장주식, 즉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식 중 피상속인의 지분 10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데,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5에 기술된 사업무관자산⁸⁾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자료의 127개 기업의 상속세 추정액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상속세 추정액(가업상속공제 미적용 및 적용시 각각 산출)(단위: 백만 원)

변수	Obs	Mean	Std. Dev.	Min	Max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A)	127	3,955.7	6,870.0	0	58,698
가업상속공제 적용시(B)	127	1,694.8	3,253.1	0	21,807
공제효과(A-B)	127	2,260.8	4,389.3	0	41,670

7) 상장주식은 시가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산정한다.

8) ①법인세법 §55조의 2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②법인세법 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법인세법 시행령 §61①2, (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⑤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과다보유현금 제외)

<표8>에서 보듯이 조사대상 127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평균 상속세는 약40억 원 규모로 앞의 <표5>에서 개인재산내역을 공개한 법인기업 96개의 평균 순상속재산의 규모가 109억 원임을 감안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평균 상속세율은 약 36%대로 추정할 수 있다. 동일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평균 상속세는 약 17억 원 규모로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보다 약 23억 원 적었으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40억 원 대비 평균 57.2% 상속세 납부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연구대상 기업 중 법인의 비상장주식 중 사업용자산, 즉, 앞서 밝힌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비상장주식 가치의 비율은 아래 <표9>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의 약 84% 수준으로, 이는 법인기업의 상속세법상 주당가치의 약 16%는 해당사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인식됨을 의미한다. 실무적으로 사업무관자산으로의 분류기준이 때때로 모호할 때도 있는데 가령 해외에 설립된 자회사는 그 회사의 설립 목적이나 역할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표9> 사업용자산 비율

변수	Obs	Mean	Std. Dev.	Min	Max
사업용자산비율(%)	116	84.38	16.54	14	100

나. 납부재원 분석

조사대상 기업의 상속세 추정액이 위 <표8>과 같을 때 <표5>의 상속재산을 재원으로 어느 정도 납부가 가능한지 계산한 것이 <표10>이다. 만일 현재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후계자가 별도의 재원마련 없이 오로지 피상속인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전제하에 금융자산과 현금화가 용이한 퇴직금, 가지급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약 29억 원 정도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경우에도 약 11억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10>에서 보는 것처럼 원활하고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마련에 주의를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10> 상속세 납부재원 분석: 현금성 유동자산으로 납부시(단위: 백만 원)

구분		Obs	Mean	Std. Dev.	Min	Max
현금성 유동자산*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107	-2,917.0	6,241.7	-55,698	2,093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107	-1,098.3	2,474.0	-14,028	2,396

*앞의 <표5>의 금융자산과 기타자산 중 퇴직금과 소유한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 상속 발생시 당장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아래 <표11>은 상속세 납부재원에 현금성 유동자산뿐만 아니라 개인소유 부동산을 포함할 경우 납부 여력을 계산한 것이다. <표11>에서 보는 것처럼 납부재원에 개인소유 부동산을 포함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그 부족액은 1억8천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21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정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첫째, 모든 재산을 상속인 1인에게 물려준다는 가정, 둘째, 부동산을 비교적 가까운 시일 안에 예상한 가격으로 손쉽게 매각할 수 있다는 가

정 등이 그것이다. 다소 무리가 있는 가정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경우,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한다면 평균적으로 상속세를 충분히 납부하고도 상당한 재원이 확보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조사에서는 피상속인의 개인재산 파악이 상당 부분 피상속인의 구두 진술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통상 이러한 경우 그 가액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또 가업의 후계자가 될 상속인이 이미 자기 소유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경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진술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조사대상 107개 기업 중 개인소유 부동산을 상속세 납부재원으로 삼았을 경우에도 여전히 재원이 부족한 경우는 단 7개 사에 불과했다. 또한 현행 제도에 의하면 가업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중 일부인 사업무관자산 이외에는 100% 과표에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은 결국 가업의 승계와는 무관한 개인 재산의 상속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표11> 상속세 납부재원 분석: 현금성 유동자산 및 개인소유부동산으로 납부시(단위: 백만 원)

구분		Obs	Mean	Std. Dev.	Min	Max
현금성 유동자산+ 개인소유 부동산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미적용시	107	-178.3	5,943.6	-50,698	8,253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107	2,139.1	3001.0	-9,028	15,323

4.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충족여부 분석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할 기본 요건들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밝힌 것처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8조에 열거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2>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2015년 12월 말 기준)

요건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요건	비고
1	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단,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 가능)	
2		피상속인(거주자)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일 것	
3		최대주주로서 50%(상장사30%) 이상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4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대표자) 재직요건 (① 또는 ② 또는 ③) ①전체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②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③가업영위기간 중 10년 이상(단,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만 인정)	
5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6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직접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단, 피상속인이 60세 이전 사망 또는 부득이한 경우 등 예외 인정)	
7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 받을 것 (단,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른 유류분 상속재산은 제외)	*개정안 입법예고
8		가업승계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상속일의 말일부터 6개월)내 임원으로 취	

	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	--------------------------------	--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대체로 8가지 요건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들 요건들 중 7번과 8번은 현재 시점에서 모두 충족이 가능하다고 간주하고, 1번부터 6번까지 여섯 개 조항에 대해 연구대상 기업의 요건 충족여부를 조사하였다.

<표13>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충족현황

구분	요건1	요건2	요건3	요건4	요건5	요건6	모든 요건
충족기업 수 (126개 중)	125	108	108	109	125	76	61
비율(%)	99.2	85.7	85.7	86.5	99.2	60.3	48.4

위 <표13>에서 보듯이 지금 당장 피상속인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여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기업은 조사대상 전체의 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정도의 기업이 사전요건 미충족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개별 요건별로는 요건1. ‘중소기업 해당여부’와 요건5. ‘후계자의 나이 18세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충족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요건들도 85% 이상 충족이 가능하였다. 다만 요건6. ‘상속 개시일 전 2년간 상속인이 해당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전체의 60%에 불과했다. 나머지 40%의 경우 자녀가 학업 중에 있거나,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장차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업승계에 뜻이 없어 다른 직업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조사대상 기업의 피상속인 평균 연령이 62세이고 한 조사⁹⁾에 따른 은퇴 희망 연령이 72.9세임을 감안할 때 승계 예정자가 입사하여 선대 경영자로부터 경영수업을 받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경영수업을 위한 준비가 최소 5년에서 7년이라는 응답자가 50%,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44.3%에 달함을 고려할 때 가업승계를 고려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급적 빨리 가업승계를 위한 후계자를 지정하고 실질 근무를 통한 후계자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14>는 회사 대표자(피상속인)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상속인의 회사경영 기간, 상속인의 연령, 근무 연한 등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전요건 자체가 창업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는 시간과 관련된 수동적인 변수들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표14> 대표자 연령대별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현황

구분	대표자 연령 70세 이상			대표자 연령 60세 미만		
	미충족	충족	소계	미충족	충족	소계
Freq.	2	12	14	32	14	46
Precent	14.3	85.7	100	69.6	30.4	100

5. 비상장주식 지분분석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승계 후 경영의 안정을 기함으로

9) 2013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201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써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사회경제적인 부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만큼 피상속인인 선대 경영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후의 회사의 지분 구조 또한 중요한 변수라 하겠다. 왜냐하면 승계이후 지분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이후 주요 경영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경영, 나아가 경영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계이후 적정한 지분 확보는 대단히 중요하다. <표15>는 조사대상 법인 기업의 조사일 현재의 지분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표15> 법인기업의 지분구조

주주구분	Obs	Mean	Std. Dev.	Min	Max
대표자	116	58.0	20.4	5	100
배우자	116	14.6	16.5	0	65
후계자	116	9.9	14.0	0	60
기타 자녀	116	9.6	13.7	0	59
기타	116	7.9	16.1	0	75
대표자+후계자	116	67.9	19.5	24	100

<표15>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피상속인인 대표자의 지분이 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표자의 배우자 지분이 14.6%, 후계자인 자녀의 지분이 9.9%, 후계자 이외의 다른 자녀들의 지분이 9.6%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명의 상속인에게 대표자의 지분 전부가 상속되어야 하므로¹⁰⁾ 후계자가 대표자 지분을 전부 상속받는다든 전제하에 상속 후 지분을 계산해 보면 평균 67.9%로, 해당 지분만 가지고도 ‘주주총회의 특별경의’를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상 기업 116개 중 81%가 승계 후 지분이 5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가업상속공제의 개선 방향

1. 보편적, 일반적 공제제도에서 선별적, 집중적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앞서 밝힌 것처럼 기업, 피상속인, 상속인 등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정해진 한도내에서 누구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형태로 이전되는 유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 이를 과세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매우 강력한 세제혜택이다. 뿐만 아니라 누진세제하에서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이 과표에서 제외됨으로써 ‘가업’ 이외의 유산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까지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유지와 성장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게 되는 혜택이 포기해야하는 상속세 세수보다 클 것이라는 것’¹¹⁾이라는 기대 또는 가정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나 가정이 참인지를 실제로 검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실제로 가업승계가, 즉 가족에 의한 승계가 제3자에의 매각을 통한 소유권 및 경영권의 이전, 전문경영인이거나 기업의 임직원에 의한 승계보다 승계이후 경영실적이 더 나은지에 대한 실증연구에서 조차

10) 기획재정부는 2015년 12월 24일 입법 예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복수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하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1인에 한한다.

11) 안숙찬(2013) pp.3203을 참고하라.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이 도출되기도 했다¹²⁾. 이처럼 가족간의 사업승계, 즉, 가업승계가 그렇지 않은 승계에 비해 기대되는 향후 국가경제적인 유익이 크다는 확증이 없는 한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은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이며,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대 기업인이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에 매진해왔고, 그 기업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며, 후대는 그 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실질적이 능력과 의지를 가졌는지 판단해 보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되면 상속세의 감면 등과 같은 혜택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도 강구해볼만 하다. 그러나 무엇을 선대 기업인의 기업가 정신의 유무 또는 과소의 척도로 볼 것인지, 또 창업이후 기업성장에 매진해 왔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삼을지, 후대 경영자가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어떤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피상속인인 선대 기업인의 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의 비중과 개인소유 부동산의 비중을 기업가 정신, 또는 기업경영을 향한 열정의 프록시(proxy)로 설정하고 해당 기업의 경영실적 및 신용등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표16>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비중과 상속재산 중 개인소유 부동산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표16>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및 개인소유부동산 비중

변수	Obs	Mean	Std. Dev.	Min	Max
상속재산 중 비상장 주식 비중	96	.5747917	.2293101	0.13	0.99
상속재산 중 개인소유부동산 비중	96	.2796875	.2686083	0	1.57*

*부채과다로 인해 순 상속재산이 개인소유부동산 보다 적은 경우

<표16>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의 비중은 57.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업의 비상장주식 중 세법상 사업용 자산비율이 84.4%(<표9>)임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가업에 해당되는 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에 불과하다. 또한 상속재산 중 28%는 기업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인소유 부동산으로 조사되었다. 즉, 가업을 물려주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절반 이상은 부동산 등 기업 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재산인 셈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비상장 주식의 비중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표17>에서 보는 것처럼 상속재산의 거의 전부를 가업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고작 13%만을 비상장주식, 즉, 가업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상속재산 중 비상장 주식의 비중이 90%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8.3%인 반면, 동 비중이 20% 이하인 경우도 전체의 7.2%에 달했다.

<표17>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비중의 분포

비상장주식/상속재산	Freq.	Percent	Cum.
0.13	2	2.08	2.08
0.14	1	1.04	3.13
0.17	2	2.08	5.21
0.18	1	1.04	6.25
0.20	1	1.04	7.29
0.22	2	2.08	9.38
0.23	2	2.08	11.46

12) 안숙찬(2013) pp.3198을 참고하라.

0.31	2	2.08	13.54
0.33	1	1.04	14.58
0.34	1	1.04	15.63
0.36	2	2.08	17.71
0.37	3	3.13	20.83
0.38	3	3.13	23.96
0.40	2	2.08	26.04
0.41	1	1.04	27.08
0.42	1	1.04	28.13
0.43	1	1.04	29.17
0.44	4	4.17	33.33
0.46	2	2.08	35.42
0.47	1	1.04	36.46
0.49	3	3.13	39.58
0.50	2	2.08	41.67
0.52	1	1.04	42.71
0.53	1	1.04	43.75
0.54	1	1.04	44.79
0.55	1	1.04	45.83
0.56	5	5.21	51.04
0.57	1	1.04	52.08
0.58	1	1.04	53.12
0.59	2	2.08	55.21
0.61	1	1.04	56.25
0.63	1	1.04	57.29
0.64	1	1.04	58.33
0.65	3	3.13	61.46
0.66	1	1.04	62.5
0.68	1	1.04	63.54
0.69	1	1.04	64.58
0.70	2	2.08	66.67
0.71	2	2.08	68.75
0.72	1	1.04	69.79
0.74	4	4.17	73.96
0.75	1	1.04	75
0.77	1	1.04	76.04
0.78	1	1.04	77.08
0.79	1	1.04	78.13
0.81	1	1.04	79.17
0.82	1	1.04	80.21
0.83	1	1.04	81.25
0.84	2	2.08	83.33
0.85	3	3.13	86.46
0.86	2	2.08	88.54
0.87	1	1.04	89.58
0.88	2	2.08	91.67
0.91	2	2.08	93.75
0.92	2	2.08	95.83
0.93	1	1.04	96.88
0.94	2	2.08	98.96
0.99	1	1.04	100
Total	96	100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사업재산의 비중이나,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개인 부동산의 비중

이 해당 기업의 신용등급과 기타 경영실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 <표18>이다.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비중, 즉 사업용 재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우수한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순이익률 등 경영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상속재산 중 개인부동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용등급은 낮았고, 이익률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가업을 이루고 성장시키면서 제한된 시간과 관심을 기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얼마만큼 투여하였는지 등을 그의 재산 포트폴리오를 통해 유추해 볼 수도 있다는 가정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만 하다. 또한 그러한 가정하에 고안된 비율, 여기서는 상속재산 중 개인부동산의 비중이 기업의 경영성과와도 유의미한 연관성을 갖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세제혜택을 다수에게 주는 대신 해당지표를 가지고 대상 기업을 보다 엄선하여 선별적이고, 개별적이며,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18> 상속재산 구성비 vs. 신용등급 및 주요 수익률지표와의 상관관계

변수	상속재산 중 비상장 주식 비중	상속재산 중 개인소유부동산 비중
신용등급	0.1666	-0.2014
매출액 영업이익률(최근 2년 평균)	0.1203	-0.1080
매출액 순이익률(최근 2년 평균)	0.1476	-0.1510
매출액 영업이익률(최근 1년)	0.1141	-0.0665
매출액 순이익률(최근 1년)	0.1590	-0.1416
총자산 영업이익률(최근 2년 평균)	0.0684	-0.0184
총자산 순이익률(최근 2년 평균)	0.0616	-0.0463
총자산 영업이익률(최근 1년)	0.0646	0.0130
총자산 순이익률(최근 1년)	0.0911	-0.0489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시점 현재 후계자가 2년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후계자가 상당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업의 성공적인 승계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후계자가 사업장에 오래 근무한 만큼 선대 경영자로부터의 경영노하우 전수 및 거래처와의 관계형성, 직원들과의 교감의 기회 면에서 그렇지 않은 후계자에 비해 훨씬 유리하고, 따라서 승계이후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확률이 높다고 하겠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래 <표19>는 표본기업들 중 후계자가 사업장에서 조사일 현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순이익률을 비교한 것이다. 후계자가 2년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9.3%인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8%로 후계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5%p 더 높았다. 매출액 순이익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후계자가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1.81%p 높았다.

<표19> 후계자의 2년 이상 사업장 근무 중 여부와 신용등급 및 주요 수익률지표

구분	변수	Obs	Mean	Std. Dev	Min	Max
근무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 (최근 2년 평균)	73	.0928996	.1183358	-.0441725	.8528941
	매출액 순이익률 (최근 2년 평균)	73	.0756961	.0789273	-.0362946	.4065794

근무하지 않음	매출액 영업이익률 (최근 2년 평균)	50	.0679166	.0537749	-.0838253	.2231022
	매출액 순이익률 (최근 2년 평균)	50	.0575288	.0399045	.0008408	.1780954

위의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가업승계를 앞둔 개별 기업들의 경우 현행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표,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비중이나 개인용 부동산의 비중과 같은 대체 지표들의 고안과 후계자의 사업장 근무기간 또는 여부 등 기존 지표들의 검증과 개선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업성장에 매진해 온 기업가와, 능력과 의지가 있는 후계자’를 구별하여 선별적,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비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2. 승계 후 업종변경 제한의 대폭 완화 또는 철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⑨항에는 기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속인이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한 예로 들고 있다. 즉, 기업을 승계한 후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를 추징하게 된다. 단,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내에서는 업종변경이 허용된다. 2015년 12월 24일 입법 예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사후관리 기간 중 매년 3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소분류내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 변경의 제한은 더욱 큰 폭으로 완화하거나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업종 변경 제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다. 가업상속지원제도가 도제식 전승을 통해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기술을 바탕으로 특산품을 제조하거나 하는 전통기업 또는 업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좁게 해석하지 않는 한 업종변경 제한 조항은 합리성을 결여한 사족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상속세 대신 얻고자 하는 것, 또는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독일처럼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 ↔ 기업의 존속 및 발전과 고용의 안정 및 계속’과 같은 가치교환체계, 특히 조세지원 ↔ 고용의 안정 및 계속에 초점이 맞춰진 가치교환체계¹³⁾를 따른다면 업종변경 제한은 완전히 철폐되는 것이 마땅하다. 즉, 가업승계를 통해 고용이 안정화되고 더 나아가 확대될 수만 있다면 업종의 변경은 거의 무제한 허용되어야 한다. 오히려 업종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실제 예를 들자면, 수입자동차의 변속기 수리를 주업으로 하는 한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의 주업종은 수리업이다. 최근 수년간 급격히 늘어난 수입자동차의 보증기간이 끝날 경우 위 중소기업과 같은 사설 변속기 수리 서비스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2세 경영자는 향후 수입 자동차의 수리업 역시 비슷한 기술을 가진 경쟁기업의 출현으로 곧 레드오션화 할 것이라고 보고, 변속기 수리와 함께 보다 높은 기술력과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변속기 재제조업, 즉, 고장 난 변속기의 부품 일부를 교체 수리하여 온전한 변속기를 생산해내는 제조업을 시작했으며, 최근 들어 변속기 재제조업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다. 만일 2세 경영자가 지금 당장 기업을 상속하게 되고,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주 업종을 수리업으로 유지해야 하고, 시장여건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재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재제조업의 경

13) 정승영(2014) pp. 140에 매우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기에 그 개념과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다.

우 현재의 수리업보다 더 많은 설비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업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수리업, 즉 서비스업에서 재제조업, 즉 제조업으로의 업종 변경은 중분류도 아니 대분류의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독일처럼 고용유지와 함께 임금유지 조항을 포함할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매년 상속직전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80%를 10년 동안 유지해야한다. 독일의 경우는 여기에 임금유지 조항이 더해진다. 가업승계시 상속세를 100% 감면받을 경우 사업승계 후 7년간 인건비 총액이 사업승계가 이루어지기 직전 7년간 평균 인건비의 700% 이상이어야 한다¹⁴⁾는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즉, 경기변동 등으로 매년 임금지급 폭은 변동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전의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이 보다 유연하게 변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조건만으로는 해고와 채용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고용의 양적, 질적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기에 독일처럼 근로자 임금의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4. 해외지사 등 투자주식의 사업용 자산 인정 필요

국세청 질의 등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5항 2.마에 의거 국내의 모기업이 보유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은 물론 해외현지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해외지사 발생주식의 본사 보유분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하여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해외지사의 경우 앞서 언급한 ‘조세지원↔ 고용의 안정 및 계속’이라는 가치교환체계에 비추어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바가 국내의 본사에 비해 적을 수는 있겠지만, 해외지사를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가 국내 본사의 경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해외지사에 본국직원들이 파견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지금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현행법 체계에서와 같이 고용유지 조건 및 본 논문을 통해 제안한 임금총량 유지 조건이 지켜지는 한 해외지사 등 투자주식에 대해 전액 공제가 아닌 합리적인 수준의 부분적인 공제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은 2014년 1월부터 가업의 경영기간에 따라 최고 500억 원까지 100% 상속세 과표에서 공제하는 큰 틀의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 있다거나, 사업의 제3자 매각이나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본 논문은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127개 기업을 대상으로 피상

14) 안숙찬(2013) pp.3196 및 조봉현(2013) pp.11을 참조하라

속인의 재산내역을 기업재산, 즉 가업, 개인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재산 등으로 분류한 실질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각각 추산함으로써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의 93%는 상속받은 금융자산 및 개인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개인부동산을 전액, 기대하는 가격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추산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가업을 잇기가 어렵다’는 주장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후계자인 자녀들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재산을 따로 축적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이후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다. 본 논문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후세 경영자의 2년 이상 사업장 근무’ 조건을 제외하고는 사전 요건을 이미 상당부분 충족한 상태였고, 승계 후 대표자 취임 등 의 경우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일부 주장도 엄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그동안 가업상속을 위해 가장 큰 어려움은 과중한 세금에 있고 가업사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너무 까다롭다는 주장이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을 통해 제시한 실증자료는 향후 가업승계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구성 특징, 예를 들면 전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전체 상속재산 중 사업자산의 비중이나 후계자의 사업장 근무 여부와 기업의 수익성과의 관계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가치교환체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 이 같은 지표들은 앞서 수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독일식의 ‘조세지원↔ 고용의 안정 및 계속’이라는 틀에서 볼 때 고용의 안정과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의 선별이라는 실무적인 유익과 동 제도가 부의 대물림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을 우회할 수 있는 유용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지원보다는 앞서 제시한 지표의 고안과 적용을 통해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선대 경영자가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평생을 기업성장에 매진해 왔고, 후대 경영자 또한 가업승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위에서 언급한 상속재산 중 개인부동산의 비중 등의 새로운 지표를 통해 선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여러 차례 다른 논문들을 통해서도 제안된바 있는 승계이후 주된 업종 변경의 제한은 현재 소분류까지는 제한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지만 산업의 융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현 상황에 비추어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실무적으로 국내본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지사의 주식의 경우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선별적인 판단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Tsoutsoura, Margarita (2015), "The Effect of Succession Taxes on Family Firm Investment: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The Journal of Finance Vol. LXX.

2, pp.649-688

- “2013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 2014,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안숙찬(2013),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대한경영학회지』 제12호(통권 110호), 대한경영학회, pp. 3189-3210
- 정승영(2014),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 『기업법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56호), 한국기업법학회, pp. 121-150
- 조봉현(2013), “독일의 가업 상속세 감면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 『중소기업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중소기업학회, pp.1-17